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1999. 4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)

가. 제안이유

○ 현재 보건소체제상 입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조례에는 입원실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개정

나. 주요골자

○ 입원실운영에 따른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제도 삭제(안 제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규정에는 입원실 조항이 있는데 전에도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었는지요?	○ 없었습니다. 이번 개정은 규제완화 차원으로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정은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40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○ 현재 보건소체제상 입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조례에는 입원실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개정

주요골자

○ 입원실운영에 따른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제도 삭제(안 제8조)

부천시수가조례 제 호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및 별지 1호서식을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입원서약서 및 보증금) ①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(별지 제1호서식)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~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.</p> <p>제9조~제12조(생략)</p>	<p>(삭제)</p> <p>제8조~제11조(현행 제9조 내지 제12조와 같음)</p>